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8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김화숙, 이병도, 이승미, 이광성,  
김정환, 오한아, 이상훈, 권영희,  
김호평, 김상훈, 김경우, 이호대,  
정재웅 의원 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.
- 나. 특히 그간 시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에서,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유족(선순위자)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까지 확대함.(안 제7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의 “(유족 및 가족제외)”를 “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)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의 “제4조제1항 제2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, 제10호, 제12호, 제13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, 제9호 내지 제13호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의 “제4조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4호의 “제3조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3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~② (생략)</b>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유족 및 가족제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2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, 제10호, 제12호, 제13호</p> <p>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 및 제3호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<b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~② (현행과같음)</b>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, 제9호 내지 제13호</p> <p>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

≙ 8,580,000천원

- 산출방식

$$= \sum_{i=1}^5 (\text{연간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 비용})_i$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

$$= \text{지급인원} \times \text{월 지급수당액} \times 12\text{월}$$

$$= 1,430\text{명} \times 100\text{천원} \times 12\text{월}$$

$$= 1,716,000\text{천원}$$